

의안번호	2215845
의 퇴 인	서영석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7.
추계번호	26C001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3억원(연평균 4억 6천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노인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 (안 제30조의3)	460	460	460	460	460	2,300	4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 (공공신탁사업)	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 및 지출 등을 위한 사업(“공공신탁사업”)을 실시할 수 있음 ※ (안제53조제3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공단은 노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30조의3 (시범사업의 실시)	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신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공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, 참여하는 위탁자·수탁자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 (공공신탁사업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3 (시범사업의 실시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사업의 시범사업 또는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공공신탁사업에 참여할 수탁자·위탁자 등의 수와 관리 재산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다만, 노인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보건복지부의 발달 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의 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신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는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－ 국민연금공단이 자산을 관리하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(비영리단체)가 개인별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신탁재산을 사용하도록 지원

- 추계기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은 2020~2021년 각각 2억원, 2022~2026년 각각 4억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
 - 추계기간인 2027~2031년에 각각 4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3억원(연평균 4억 6천만원)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노인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노인 공공신탁사업 시범사업 (안 제30조의3)	460	460	460	460	460	2,300	4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